

입 법 예 고

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 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2026. 9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  
( 축 산 유 통 팀 )

## 1. 개정이유

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춰 과태료 별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개정 법률에서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를 벌칙으로 강화하면서 과태료 규정이 변경(제34조 제1항 17호)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인용 규정을 수정(안 제16조 별표 2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    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    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     타 : 해당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#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저목 위반행위란 저목 중 “않거나 거짓으로 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